

이사회 운영규정

2018. 12. 21. 제 정 규정 제12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루닛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대표이사 외의 이사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사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 (및/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)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9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 - (10)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1)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- (12)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 - (13)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4)이사, 감사의 보수
 - (15)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(16)법정준비금의 감액
 - (17)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경영에 관한 사항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선임 및 해임
 - (6) 공동대표의 결정
 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 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12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 - (13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 - (14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 - (15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 - (16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- (1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(1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- (1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 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 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- (4) 결손의 처분
 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-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- 5. 기 타
 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 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0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12조의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8조(준용규정)

제8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9조(경비지급)

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석한 사외이사, 감사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2018.12.21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